

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
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시에서는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및 핵심기술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 의료기기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7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·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대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대 표 : 남유진
- (3) 소 재 지 :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
- (4) 출연예정액 : 금600,000천원

※ 6차년도('16.9월~'17.8월) 소요예산 중 미확보 금액

나. 주요 사업

(1) 사업명 :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

(2) 사업기간 : 2011년 9월 ~ 2017년 8월 (6년간)

※ 구미지식산업센터 조성으로 사업기간 '18.12월로 연장예정

(3)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 (금오테크노밸리 IT의료융합기술센터)

(4) 총사업비 : 1,213.5억원 [국비(지특)820, 도비105, 시비243, 민자45.5]
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			
	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6년이후
계	1,213.5	87.84	119.12	151.18	194.93	277.05	118.26	265.12
국비	820	20.00	58.87	95.60	122.60	215.00	100.00	207.93
도비	105	10.00	22.50	24.00	24.50	14.00	10.00	
시비	243	55.00	30.00	26.00	41.70	40.30	8.00	42.00
기술원	2		0.54	0.44	0.51	0.25	0.26	
민자	43.5	2.84	7.21	5.14	5.62	7.5		15.19

(5) 추진주체 : 산업통상자원부, 경상북도, 구미시

(6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7) 사업내용

- IT의료융합기술센터(본관동, 연구실험동) 및 공용장비 구축
- 구미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국내·외 기업, 연구소 유치
- IT융합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

(8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0. 11 : 예비타당성 심사 및 국책사업확정
- 2011. 9 : 주관기관 선정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
- 2011. 11 : 센터부지매입 완료(금오테크노밸리 內 4,100㎡)

- 2013. 8 : IT의료융합기술센터 리모델링(연구실험동) 준공
- 2014. 10 : IT의료융합기술센터 신축(본관동) 준공
- 2015. 7 : 구미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
- 2017. 2 : 구미지식산업센터 건축 착공
- 2018. 12 : 구미지식산업센터 준공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의료기기의 경우 시장이 다소 보수적이고 한 번에 시장매출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
- (2) 구미의 세계적인 IT 생산기술 기반과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의 동력을 접목하여 전통적인 IT제조 산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고용 창출 가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- (3)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- (4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5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주요사업 실적

주요사업 실적

□ 기반구축사업

가. IT의료융합기술센터(상용화지원센터)

○ 연구실험동(리모델링)

- 건축기간 : 2013. 1월 ~ 2013. 8월
- 사업비 : 6,241백만원(국비 1,589, 도비 837, 시비 3,815)
- 연면적 : 4,941m²(지하 1층, 지상 4층)
- 사업내용 : 클린룸, 국내외 의료기기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유치
- 입주현황 : 16개사, 1개센터 / 입주율 95.3%

○ 본관동(신축)

- 건축기간 : 2013. 8월 ~ 2014. 10월
- 사업비 : 11,259백만원(국비 4,131, 도비 3,814, 시비 3,314)
- 연면적 : 6,055m²(지하 1층, 지상 5층)
- 사업내용 : 대강당, 회의실, 산학공동연구실, 공동장비실 등

○ 현 황 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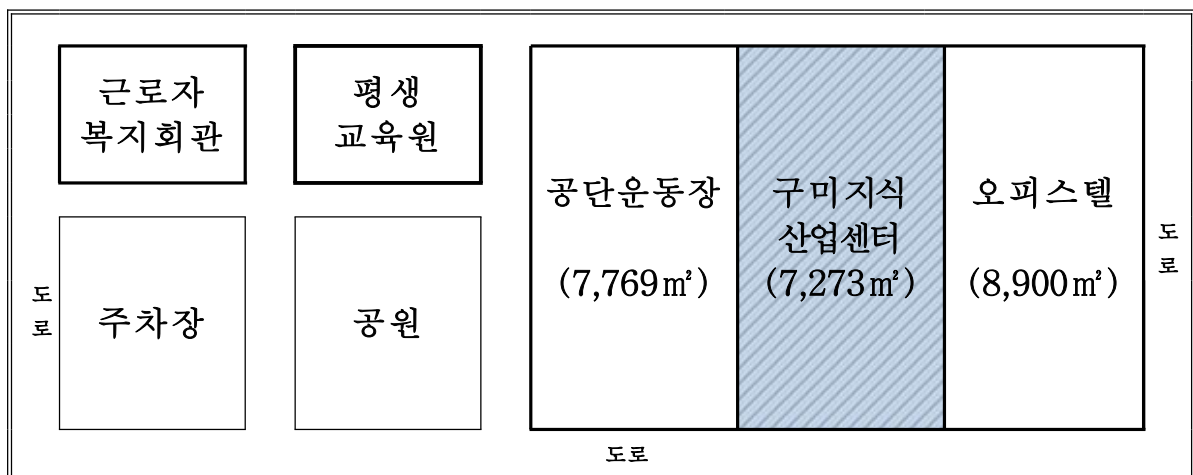
IT의료융합기술센터 연구실험동(리모델링)



IT의료융합기술센터 본관동(신축)

나. 구미지식산업센터(집적생산단지) 조성

- 사업기간 : 2014. 9월 ~ 2018. 12월
- 사 업 비 : 410.8억(국 302.3, 도 53.5, 시 55)
- 부지면적 : 7,273m²(2,200평)
- 건축면적 : 2,211.91m²(670평)
- 연 면 적 : 18,820.29m²(5,690평)
- 규 모 : 지상 10층, 지하 1층
- 주요시설 : 생산시설(임대공장), 클린룸, 회의실, 전시실 등
- 내 용 : 국내외 의료기기 관련기업 유치 등
- 위 치 도 : 구미시 공단동 256-24(공단동 운동장 부지)



○ 조 감 도



□ 기업지원 및 업종 다각화 지원

- 공용장비 구축 및 활용
 - 장비 구축 : 25종 구축 (12종 구축 진행 중)
 - 장비 활용 : 113개 업체 916건
- 기업 기술 지도 : 147건
- Cell Group 운영 : 5개분야 44회 운영
- 마케팅 지원 : 국내외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지원 19회
- 업종다각화 성공 대영오앤이 등 12개사 (진행중 30개사)
- 의료기기 앵커기업 유치 : 삼성메디슨, 디알젼, (주)엔디디 3개사
 - ※ 글로벌기업인 지멘스社, 맥슨 모터 등 구미 이전 협의 진행 중

□ 인력양성사업

- 금오공대 메디컬IT융합공학과 및 의공학대학원 설립
 - 석사 9명 배출, 학부생 131명 재학 중
- 캘리포니아대학교 학생연구원(8명) 교환 프로그램 운영
- 재직자교육과정 운영 : 21개 강좌, 155명 참여

□ 기술개발

- ‘초광각 무선 디지털 전자 내시경 모듈에 관한 연구’ 등 논문 20건 게재
- 5대분야 특허 26건 등록
- 수술현미경 3D 영상 광학계 세계최초 근적외선(NIR) 및 일반 화이트 광원을 이용한 전임상 실험 성공
- 전동식 핸드피스 식약처 인허가 및 한국우수의약품제조기준(KGMP), 유럽연합통합규격(CE) 인증 획득

□ 연계협력 지원

- 경북의료기기 협의회 설립(대경권 병원, 연구소, 대학 등)
- 대경권 의료기기 상생포럼 운영(대학병원, 기업, 연구소 등)
- 국내외 연구기관, 대학 상호교류 및 연계협력 MOU 22건 체결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
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

□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

제11조 (산업기술개발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(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. 이하 “산업기술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, 부품·소재 및 장비·

설비(플랜트를 포함한다) 기술

2.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

3.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,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

4.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·시스템 기술

5.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·자원기술

6.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

7. 디자인·브랜드·표준 관련 기술, 유통·전자거래 및 마케팅·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

8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

9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

10. 삭제 [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]

11.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

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

13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(이하 "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

2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(이하 "참여기관"이라 한다)

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기획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
2.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 (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
2. 산업기술 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
3. 연구장비·시설·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(集積化) 촉진
4.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·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·관리 및 활용의 촉진
5. 산업기술의 표준화, 디자인·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
6.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·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
7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(이하 "주관기관"이라 한다)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(제1항은 제외한다)·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관연구기관"은 "주관기관"으로, "산업기술개발사업"은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 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 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 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 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 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-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관 실 · 과		투자통상과
입 안 자	과 장	유 익 수
	담 당	권 기 열
	담 당 자	박 상 진 (480-6142)